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에따른징계기준 등에관한규정

2017. 5. 16 제정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(이하 '청탁금지법'이라 한다) 제21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처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청탁금지법 제6조, 제8조 및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, 제25조 내지 제27조를 위반한 덕성학원(수익사업체 소속직원 포함) 및 산하 교육기관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
- 제3조(징계의 요구) 각급 학교의 장은 제2조 위반자에 대하여 임면권자에게 징계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.
- 제4조(징계기준) 청탁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위반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경우에는 징계 관련 제반규정의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처리하되, [별표1]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 및 [별표2] 외부강의 등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.

제5조(시행세칙)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<2017. 5. 16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

l 비위행위	형태
	00만 원 미만
500만 원 이상	
<u> </u>	ii
<u> </u>	- 300만 원)을
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거나 약속 또는 요구한 경우 I 수동적	
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거나 약속 또는 요구한 경우 수통적 견책 검색 · 감봉 감봉 · 정직	l
	능동적
건책 · 감봉 감봉 · 정직	감봉 · 정직 ·
해임 금액에 상관없이 의례적인 명목의 금품을 지속(3회 이상)으로 수수한 기	경우 !
수동적 ''라볼 · 정직 ' '정직 · 해임	<u> </u>
해임 · 파면 ¦	·
	<u> 능동적 </u>
- '정직 · 해임 '해임 · 파면	¦ 해임 · 파면
	시미하 거 이 미
-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	<u> 아니한 경우 </u> !
<u> </u>	I
<u> </u>	능동적
└ 정직 · 해임 · 파면 └ 해임 · 파면	파면
<u> </u>	<u> </u>
	파면
-	╎ 능동적 │
 해임 · 파면 파면 파	

주1) 수동 : 거절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

주2) 능동 : 요구한 경우

[별표 2] 외부강의 등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

¦조치 대상 ¦조치 기준	1
 	
¦ 사후 신고(3일 이상 경과 시)	상 시 경고
l 미신고 경고 또는 3회 이상	시 징계
¦(의도적인) 허위 신고 ¦ 경고 또는 징계	!
¦ 초과금액 미신고, 미반환 ¦ 경고 또는 징계	1